

부 산 가 정 법 원

심 판

사 건 2016느단200244 부양료심판청구서

청 구 인 A (1940년생, 남)

주소 창원시

소송대리인 **법무법인

소송복대리인

상 대 방 1. B (1963년생, 여)

주소 울산

2. C (1966년생, 여)

주소 울산

3. D (1968년생, 여)

주소 부산

4. E (1975년생, 남)

주소 부산

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

주 문

1. 청구인에게 각 부양료로, 2017. 1. 31.부터 청구인이 사망에 이르기까지, 상대방 E는 월 30만 원씩, 상대방 B, 상대방 C, 상대방 D는 각 15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각 지

급하라.

2. 청구인의 상대방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.

3.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상대방들은 연대하여 청구인에게 장래 부양료로 150만 원을 2016. 6. 1.부터 청구인이 사망하는 날까지 매월 25일에 각 지급하라.

이 유

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청구인은 현재 78세로 매월 받는 약 20만 원의 노령연금 외에는 별다른 수입원이 없고, 배우자인 망 강**이 2012. 2. 22. 사망하기 이전인 2009. 8. 14.경 유일한 부동산(사직동 소재 아파트)을 1억 6,300만 원에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이 당시 망 강**과 동거하던 상대방 E에게 귀속된 점, 청구인이 소외 강00과의 동거를 위하여 상대방 E로부터 전세금 5,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, 2016. 5.경 이후 청구인과 사이에 위 금원의 반환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 위 상대방은 그 후 청구인에게 지급하던 월 40만 원의 용돈을 전액 중단한 점, 결국 위 강00이 상대방 E에게 위 5,000만 원의 반환을 약정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점, 현재 청구인은 위 노령연금 외에는 별다른 자산이 없는 반면, 상대방들은 각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일정한 소득이 있거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, 상대방들은 아버지인 청구인을 부양할 의무가 있다.

나아가 그 부양료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, 청구인의 나이 및 건강상태, 소득현황, 상

대방들의 각 경제적 능력과 가족관계, 상대방 E에게 위 매도대금이 귀속된 점, 청구인과 상대방들 사이에 존재하는 갈등의 원인과 정도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할 때 상대방들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부양료 액수는 2017. 1. 31.부터 청구인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상대방 E는 월 30만 원씩, 상대방 B, 상대방 C, 상대방 D는 각 15만 원씩으로 정함이 상당하므로,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.

2017. 1. 11.

판사 김 수 경